

## [서식 예] 내용증명 : 계약취소(미성년자 할부구입 책)

## 내용증명

발 신 인 O O O 주 소

수 신 인 O O O 주 소

## 계약해지 통고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자 0 0 0(만00세)가 0000년 00월 00일 학교 앞에서 문화서적시리즈 1세트를 월15,000원씩 2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귀하에게 구입하였습니다.
- 3. 그러나 본인의 자 000는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책을 구입하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으니 이를 취소합니다.
- 4. 또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며, 인도받은 서적을 반환하오 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증 명	·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ul> <li>・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li> </ul>
	•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
	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